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72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7년 10월 24일
- 라. 회부일자 : 2017년 10월 31일

## 2. 제안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7,771명에서 18,144명으로 373명 증원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인력 증원 : 345명
  - 일반직 : 5급 이하 333명
  - 연구직 : 연구관 2명, 연구사 10명 / 총 12명
- 나. 소방서 세곡 119센터 신설에 따른 총원 : 28명
  - 소방공무원 : 소방령 이하 28명

구분	정원 총계	일 반 직			연 구 직			소방공무원		
		소계	4급 이상	5급 이하	소계	연구관	연구사	소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이하
현행	17,771	9,909	293	9,616	358	57	301	6,951	35	6,916
조정	18,144	10,242	293	9,949	370	59	311	6,979	35	6,944
증감	+373	+333	-	+333	+12	+2	+10	+28	-	+28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 총 정원을 17,771명에서 18,144명으로 373명 순증하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인 변동사항은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로 직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격무부서 인력 지원을 위한 일반직 333명, 문화시설 추진과 미세먼지 예·경보제 강화 등 연구직 12명, 강남소방서 세곡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 28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총 정원 17,771명 → 18,144명〉

구분	총계	2.3급	3급	4급	5급 이하	연구관	연구사	소방정 이상	소방령 이하	교원
현행	17,771	23	17	231	9,519	57	301	35	6,916	498
개정후	18,144	23	17	231	9,852	59	311	35	6,944	498
증감	+373	-	-	-	+333	+2	+10	-	+28	-

구 분	총 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합의제 행정기관
개정 전	17,771	9,872	300	6,951	498	150
개정 후	18,144	10,215	300	6,979	498	152
증 감	+373	+343	-	+28	-	+2
사 유		- 복지·안전 - 문화·경제 - 재생·교통 - 환경·공원 - 기획·조정 - 행정·재무		- 세곡 119 안전센터 신설 (+28)		

#### 나. 일반직 공무원 증원(안 제2조 및 별표 3)

- 시는 최근 하위 직급을 중심으로 조직내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26일부터 내부 자유게시판을 통한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과중한 업무부담과 인력증원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 이후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조직문화 혁신대책을 순차적으로 수립·발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부족한 실무인력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고충업무에 대한 인력 추가배치와 신규사업 필요인력의 확충을 위해 일반직과 연구직 공무원 345명을 증원하기로 함.
- 시는 우선적으로 본청의 고충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증원하고,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시급한 고충인력에 대한 제한적 증원이후 별도의 조직진단을 거친 후 중·장기적으로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있음.

- 현재까지 시는 복지·안전, 문화·경제, 재생·교통, 환경, 기획·소통, 행정·재무 등으로 시정 업무 분야를 구분하고 이들 분야를 또 각 실·국·본부 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인력 수요에 따라 관련 인력 증원계획을 수립하였음.
- 다만, 금번 조직 증원은 일선 실무인력으로부터 제기된 인력 확보 요구 등이 급작스럽게 반영되면서 현재 시점까지 증원 인력의 구체적인 부서별 배치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되었음.
- 인력 증원에 대한 필요성과 이번 증원 과정의 불가피성을 이해할 수 있으나 부서별 혹은 업무별 증원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된 공무원 증원 규모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 지방자치단체 인력 규모는 미래 행정 수요나 발전계획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장래의 인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년 단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시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7~2021)에 따르면 시는 2021년까지 변화된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17,890명의 정원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 증원은 5년 단위의 이 계획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다소 과도하고 급박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7~2021)〉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정원	17,476	17,715	17,769	17,812	17,896	17,890
증감	-	+239	+54	+43	+84	△6

- 공공조직은 인력 운용의 탄력성이 일반 민간의 영역보다 훨씬 낮아서 일단 채용이 완료된 경우 행정서비스 수요감소와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 인력운용계획부터 채용까지 전 단계에 걸쳐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임.
- 또한, 공무원 정원의 확대 이후에라도 시 전체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과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해 다시 한번 각 업무별 필요 인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실제 채용 등은 다소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다. 소방 공무원 증원(안 제2조 및 별표 3)

- 시는 2018년 4월 신설 예정인 세곡 119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28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르면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면적  $2\text{km}^2$  이상인 경우에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남구 세곡지구(세곡·자곡·율현동) 개발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해당 지역은  $6.36\text{km}^2$ 의 관할면적에 올해 8월 기준으로 16,760세대 44,738명이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말 지역개발 완료시점에 119안전센터 설치기준(5만명)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됨.
- 해당 지역은 기존의 수서 119안전센터가 관할하고 있었으나 세곡동 지역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증가로 안전수요 집중현상 분산 및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에 따라 수서 119안전센터에서 세곡 119안전센터를 분리·신설하고자 함.
- 현재 시에는 24개 소방서와 116개 안전센터, 24개 구조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의 제9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13~'17년)에 따라 세곡 119안전센터 설치 이후 2019년에는 마곡 119안전센터를 신설할 계획임.
- 세곡 119안전센터는 강남구 율현동 265에 대지면적  $1,197\text{m}^2$ , 연면적  $1,200\text{m}^2$ 의 지상3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중에 있으며, 2018년 4월 업무를 개시할 예정임.
- 해당 안전센터는 펌프차와 구급차 등 소방차량 4대와 3교대 근무를

대비해 모두 28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세곡 119안전센터 장비 및 인력 운용계획〉

- 운용 소방력 : 차량 4대 / 인력 28명

구 분	합 계	센터장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이륜차
배치차량(대)	4	-	1	1	1	1
기준인력(명)	-	1	4	2	3	1
소요인력(명) (기준인력*3교대)	28	1	12	6	9	-

- 신규 조성된 세곡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중 고령자 거주 단지(407세대)가 있고, 457병상 규모의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 구조·구급 수요가 충분하고<sup>1)</sup>, 본서 구조대와의 거리(7.8km) 및 소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19센터 설치와 해당 인력 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최근 시의 소방인력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런 양적 팽창이 소방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각 소방관서 간 이상적인 공급체계를 갖추는 등 소방 서비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1) 2017년 8월 기준 해당 지역 노령인구는 5,325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음.

## 라. 기준인건비 및 정원관리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2)에 따라 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한 정원을 운용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가 2017년 제시한 시의 기준인건비는 1조 6,025억원이며, 이에 따라 당초 시는 2017년 예산편성을 통해 1조 5,887억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정원조정(132명) 등을 반영한 올해 총 인건비는 1조 5,985억원으로 여유 인건비는 현재 약 40억원에 불과함.
- 지난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증원한 인력 168명과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 373명의 인건비 소요액 약 394억원을 반영할 경우 올해의 기준인건비는 물론이고, 행정안전부가 올해 12월 서울시에 통보할 2018년도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우려도 제기됨.

---

2)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액〉

구 분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무기계약직 제외)	전년대비 증가율
2014	1조 3,455억원	17,651명	-
2015	1조 4,503억원	17,801명	1,048억원(7.8%)
2016	1조 5,256억원	17,855명	753억원(5.2%)
2017	1조 6,025억원	17,853명	769억원(5.0%)

- 물론, 행안부는 기준인건비를 통보하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에는 기준인건비 총액의 3%(약 480억원)를 자율적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직접 위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절대 적절한 조치로 이해될 수 없음.
  
-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증원된 인력의 채용시기 조절과 기존 인력 규모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인건비 효율화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됨.

#### 마.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시 조직내부의 불미스러운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하위직을 중심으로 제기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상당기간 제기되어온 시 조직 내부의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인력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인력 활용계획 등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현재 제출된 개정안의 인력소요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조직 내부의 의견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임.
- 또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조직의 정원이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인건비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질 금번 정원 조정이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정원의 확대 결정 이후에라도 조직진단과 각 업무량 분석 등의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채용규모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의 인력 운용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문제는 없는지 살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1】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6조(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 지방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과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9급 지방공무원을 8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

는 것으로 보고,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2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2. 삭제

3. 소방공무원의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인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 2]

###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

(제5조·제8조 및 제9조 관련)

#### 1. 소방서의 설치기준

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설치된 소방서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방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

## 2. 119안전센터의 설치기준

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특별시: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면적 2km<sup>2</sup> 이상

2)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인구 3만명 이상 또는 면적 5km<sup>2</sup> 이상

3)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 인구 2만명 이상 또는 면적 10km<sup>2</sup> 이상

4)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군: 인구 1만 5천명 이상 또는 면적 15km<sup>2</sup> 이상

5)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 인구 1만명 이상 또는 면적 20km<sup>2</sup>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3. 소방정대의 설치기준

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소방정대를 설치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이동 인구 및 물류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방정대를 설치할 수 있다.

## 4. 119지역대의 설치기준

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km<sup>2</sup> 이상이거나 인구 3천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농공단지·주택단지·문화관광단지 등 개발 지역으로써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기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